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우선보조〉

■ 광규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328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2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0

I .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광규택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6. 7. 30.
- (3) 회 부 일 : 2026. 7. 3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경제성과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치료 등을 위하여 그 지역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사업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후단 신설).

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수립·시행하는 계획이며, 「지역보건법」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건 의료 수요의 측정 등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¹⁾

1)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보·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다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단계이나, 이와 별개로 「지역보건법」에서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법이 정하고 있는 수립절차에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음.²⁾

□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요 예산사업은 다음과 같음.³⁾

<2026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비용 지원예산 주요 현황>

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3343-301)

- (내역사업) 건강증진 정책개발 및 지원 1,186백만원
- (내내역사업)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지원 113백만원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통해 지자체 지역보건계획수립 시 정책·기술 지원 등 수행

2)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6533-309)

- (내역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9,603백만원
- * 만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1,200명의 조사원을 통해 매년 조사를 실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260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통계생산을 통해 근거자료 제공

□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그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국가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려는 것임.

2) 현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년~2026년)이 수립되어 있으며, 각 지자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https://www.khepi.or.kr/kps/localHealthPlan/planList.do?menuId=MENU01118>

3) 다만,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을 위한 비용은 해석에 따라 그 범위를 달리 볼 수 있으므로,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총 89개의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⁴⁾ [참고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광주	-
대전	-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2021년 대비 2024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율(3.51%)이 전국 평균(0.82%)을 크게 상회하여 인구소멸위기가 심각한 실정이고,⁵⁾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의료취약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2025년 기준 분만취약지 108개,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18개, 혈액투석 취약지 10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음.⁶⁾

< 2025년 의료취약지 지정 현황 >

시도	분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취약지(18개)	혈액투석 취약지(10개)
	A등급(29개)	B등급(22개)	C등급(57개)		
대구	군위군				
인천	옹진군	강화군		옹진군	옹진군
경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고성군 양양군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영월군 철원군 양구군	홍천군 평창군 화천군 인제군 양구군	평창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진천군 음성군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홍성군	금산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무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남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 함평군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고흥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신안군	신안군
경북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울릉군	문경시 봉화군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청송군 영양군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하동군 거창군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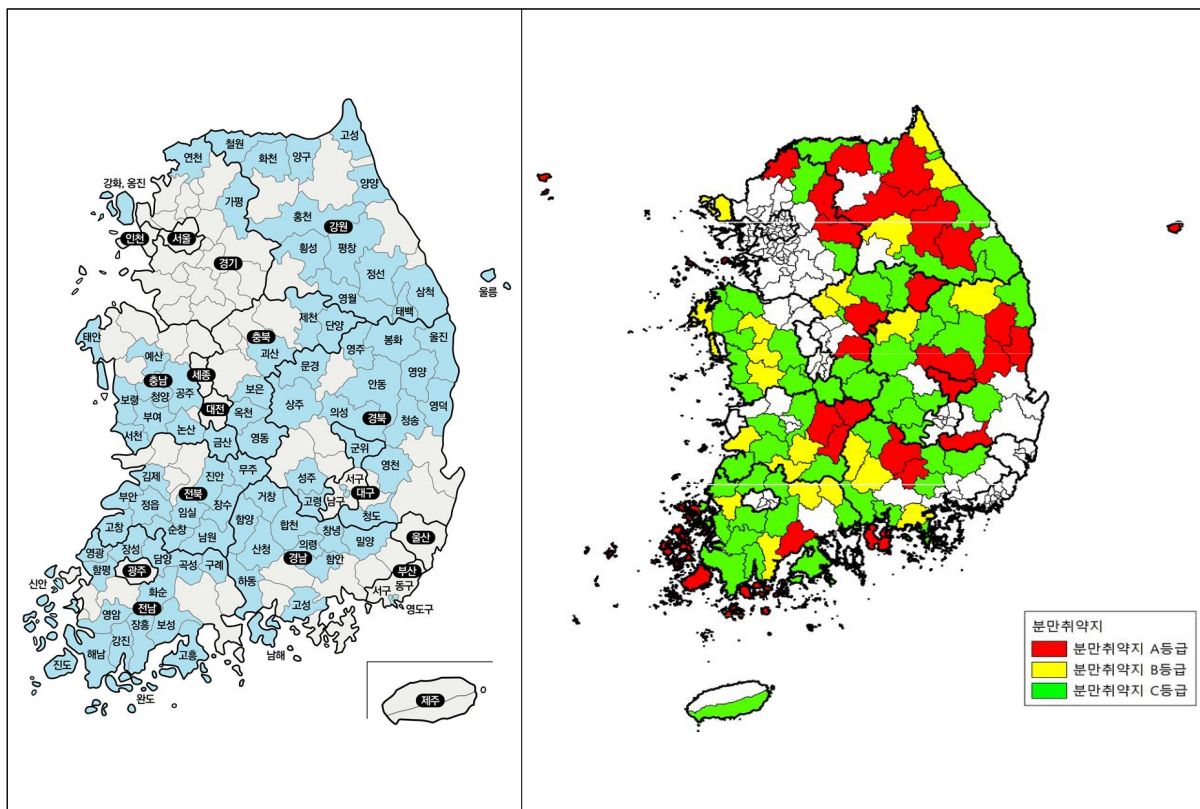
주: 음영 표시는 의료취약지 중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5) 김용원, 「인구감소지역 지정 3년, 인구 변화는?」, 나라살림브리핑 제427호, 2025.2.27.

6) 보건복지부는 별도 고시 없이 각 지원사업안내지침에서 의료취약지 지정 현황을 알리고 있음.

- 2025년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의 시군구 중 부산 및 대구의 5개 구를 제외한 84개의 지역이 분만취약지로도 선정되어 있으며, 분만취약지 중 일부는 소아청소년과 및 혈액투석 취약지로도 지정되어 있음.

< 인구감소지역 및 분만취약지 지도 >



□ 다만, 현재 인구감소지역 및 의료취약지에 대한 다수의 지원 법률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포괄적·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지원 근거 마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2023년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동법 제23조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⁷⁾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역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음. 동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지원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⁸⁾

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의 만성질환 예방·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과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와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심혈관·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인력, 의료서비스의 품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시설 및 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8)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

- 인구감소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취약지에 해당할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지원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음.⁹⁾
- 필수의료로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医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7년 3월 시행될 예정으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필수의료취약

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등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균형성장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분석하여야 한다.

1. 인구 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에는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에 대한 지원규정도 마련하고 있음.¹⁰⁾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점토)

□ 인구 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보건의료계획의 시행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에 공감함. 다만, 보건의료 부문에 있어 지역별 형평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 수 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별 수요와 의료공급 실정, 지자체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이라 하여 재정을 우선 보조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27.3.11. 시행)」에서는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필수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수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필수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위 규정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

10)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필수의료취약지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권별 필수의료의 공급 및 이용실태,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등을 고려하여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필수의료취약지에 대하여 필수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수의료취약지 지정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설치) 필수의료를 집중적·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시행 2024. 2. 2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2024. 2. 2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 044-205-3531

1. 인구감소지역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2.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기준일 : 2023년 7월 1일